< 간이투자설명서 > (작성기준일 : 2026.07.06.)

에셋플러스 차이나 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 1 호 (주식) [펀드코드 : 84832]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로 **중국 국내시장(상해, 선전) 및 역외시장(홍콩, 미국 등)**에 장기투자 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외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 변동 위험**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에셋플러스 차이나 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 1 호 (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국 관련 해외기업들의 주식을 주로 편입하는 **에셋플러스 차이나 리치투게더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국내시장(상해, 선전) 및 역외시장(홍콩, 미국 등)에 상장된 중국 관련 회사 또는 매출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주식 및 그것을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R: Depository Receipt) 등에 주로 장기투자하여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기대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1) 투자대상기업** 이 투자신탁은 중국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중국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 자국 내수 소비시장을 선도하면서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춘 기업과 각 산업을 주도하는 일등기업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산배분전략으로 시장변동 위험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 일등기업: 각 산업 내 경쟁력을 보유한 일등기업 투자로 어려운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고, 호황기에는 더 나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 소비관련 기업: 중국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중국정부의 소비확대 정책으로 혜택이 커질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배력이 강화되는 기업: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속 가능한 중고속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을 기업의 몫에 투자하는 방법 - 소비자 접점이 많고, 네트워크가 구축된 기업: 경제성장과 중국 국민들의 소득증가로 내수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소비자 접점이 많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한 기업의 이익 성장에 투자하는 방법 **2) 에셋플러스 조사분석시스템** 기업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기 위해 아래 그림의 5 단계를 거쳐 투자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석기업의 제품이 장기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투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분석기업의 몫이 증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분석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걸러내고, 이익 창출의 원동력을 파악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추가납입 가능) 모자형(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0% 이내	1.6400	0.5800	1.7000	1.7288	275	457	643	1036	21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1.9900	0.9300	1.8400	2.0788	213	432	658	1128	2428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 이내	1.3500	0.2900	1.2200	1.4386	197	349	506	837	17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1.5250	0.4650	1.3900	1.6138	165	336	513	884	19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1.6900	0.6300	-	1.7786	182	370	564	971	21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1.6500	0.5900	-	1.7378	178	362	552	950	20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1.2100	0.1500	-	1.2100	124	253	386	669	1,4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1.2300	0.1700	-	1.3203	135	276	421	728	1598

주 1)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8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수수료선취-온라인(Ae)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8 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종류	최근 1 년 ('25.07.07.~'26.07.06.)	최근 2 년 ('24.07.07.~'26.07.06.)	최근 3 년 ('23.07.07.~'26.07.06.)	최근 5 년 ('21.07.07.~'26.07.06.)	설정일 이후 ('08.07.07~'26.07.06.)
집합투자기구	17.29	20.71	15.75	0.15	7.96
참고지수	-5.35	8.97	4.86	-6.18	1.43
수익률 변동성(%)	20.46	22.31	20.69	21.69	21.27

주 1) '**참고지수 = MSCI China Index×90% + CALL×10%**'이며,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폭이 커서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 추이는 과세 전의 수익률이며, 참고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 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이승우	1978	책임	10 개	1,692 억원	48.16	29.19	47.12	28.94	20 년 3 개월
진준서	1991	부책임	3 개	441 억원	48.16	28.74			8 년
이민규	1995	부책임	-	-	17.18	0.00			4 년 4 개월

주 1) "책임운용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자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 등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므로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 중 50% ~ 100% 수준에서 통화선물(환) 거래로 환 위험 헤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table>
<tr><td>매입 방법</td><td>1) 17 시 이전: 제 3 영업일 기준가 적용
2) 17 시 이후: 제 4 영업일 기준가 적용</td><td rowspan="2">환매방법</td><td rowspan="2">1) 17 시 이전: 제 4 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6 영업일 지급
2) 17 시 이후: 제 5 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7 영업일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www. 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td></tr>
<tr><td>과세</td><td colspan="3">·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 집니다.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해외주식투자 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가입기한</td><td>2017 년 12 월 31 일까지</td></tr>
<tr><td>가입한도</td><td>1 인당 3 천만원
(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td></tr>
<tr><td>대상펀드</td><td>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td></tr>
<tr><td>세제혜택</td><td>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td></tr>
<tr><td>세제혜택적용기간</td><td>가입일부터 10 년까지</td></tr>
</tabl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 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 외 수령 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익증권 가입자: 연금저축계좌의 과세]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 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 외 수령 시)에 대해 과세하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수익증권 가입자: 퇴직연금계좌의 과세]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에셋플러스자산운용㈜ (대표번호: 02-1544-7878 / 인터넷 홈페이지: www.assetplus.co.kr)</td></tr>
<tr><td>모집[판매] 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0 조좌(집합투자규약상 설정 가능 좌수)</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 년 08 월 28 일</td><td>존속 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및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8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8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td></tr>
</table>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8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8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랩(W)**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보유한 투자자
		고액(I)	투자금액이 50 억원이상인 투자자
		기관(F)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인 경우
		고액(S-I)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투자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투자자
		퇴직연금(I-2)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자금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인 경우
		퇴직연금(C-P2)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인 경우
		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인 경우 (On-Line 가입자)
		퇴직연금(C-P2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인 경우 (On-Line 가입자)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assetplu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assetplus.co.kr)